### <서식 2>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ICT R&D 혁신 바우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하여 제출)

사 업 명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공고번호	연구개발
8 프린모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책임자

## □ 공통사항

#### (해당/비해당 여부를 V 로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검토 내용	해당여부	
대상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b>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b>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ul> <li>▼ 전형 과제의 대통이 중요 대통에 매당 이는가?</li> <li>□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li> <li>▶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li> </ul>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가?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기업인 경우 해당여부 해당으로 체크시 주관, 공동	해당되는	<u>-</u> 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ul> <li>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li> <li>(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의결 기업은 예외)</li> </ul>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 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가?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산업기술진흥협회발행)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가? (보유하는 경우 인정서 번호:		

# □ 우대 사항(공통사항)

#### (해당/비해당 여부를 V 로 반드시 표기할 것)

우 대 내 용		해당여부	
		비해당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 <b>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b> 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 <b>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b> 인 경우 <b>(1점)</b>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b>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b> 한 경우 <b>(1점)</b>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과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기업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지역 소재(본사기준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은 제외) 비ICT기업이 ICT 용합을 통한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비ICT기업 여부는 IITP에서 판단할 예정이며, 본사의 지역 소재를 확인할 수있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R&D지원을 통해 확보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공공기술 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2점) * 평가위원회에서 "공공기술 확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반영			

## □ 감점 사항

#### (해당/비해당 여부를 V 로 반드시 표기할 것)

감 점 사 항		해당여부	
		비해당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의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경우(1점)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2023년 월 일

신청기관명(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기관장: (직인 또는 인감)